##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25 )**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건설(451200)	비정기	2,900억원대	지방청

## Tex I 조사성과(결과)

##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1X 11월 ■■의 건설업 부문 물적분할하여 설립, '1X년 ○○○

Text 흡수합병에 따른 분양사업 승계로 매출액 증가하였으나 분양사업 종료로

Text '22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자재 등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하락

Text - '23년 11월 ■■산업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4년 시공능력 000위임

## Text 나. 적출성과

####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과다경비 등 부인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리 비용)	11207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비용 부인
2	합병·분할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11403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3	과다경비 등 부인 (타법인 비용 대납)	1120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납액(조경공사) 비용 손금 부인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손금부인)	10904	무형자산 내용연수 오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5)	손익·비용 귀속시기 오류 (이자비용 귀속시기)	10204	계열사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귀속시기 오류
6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11303	계열사에 사업시행권 이전 시 기지출비용 미수취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7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0202	사주의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 손자 에게 증여하여 과세

##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7)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비용 부인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여수 소재 업무무관

Text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누락한 혐의가 있어

Text 검토 착안함

Text ○ **(부동산 취득)** 조사법인은 '13.3월 전남 여수 △△ 산 00-0번지를 취득하고 Text '17.1월 전남 여수 △△ 산 0000번지 외 3필지를 추가 취득하였음

#### Text < 조사법인 부동산 취득 내역 >

(m². 백만원)

Table

Э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실거래가 (기준시가)
	전남 여수 △△ 산 00-0	'13. 3. 31.	임야	00,000	000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0,000	(000)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0,000	(000)
	전남 여수 △△ 0000	'17. 1.19.	제 방	000	(00)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00,000	(00,000)

Text - (업무 미사용) 조사법인은 '13년 및 '17년에 취득한 여수 임야와 여수 토지를 Text '24년 말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sup>Text</sup> ○ 부동산 탈세(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관련 기사(뉴스핌, 2021.5.13.)

#### Table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2021년05월13일 12:00



가 + 가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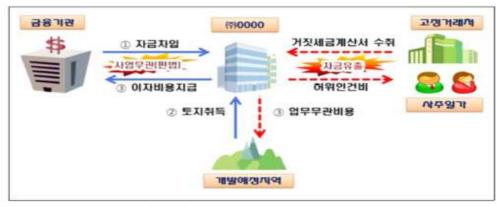
#### 법인자금 이용 불법투기 사주일가 대거 '덜미'

 $[M8=+\Delta H]$  최영수 기자 = # 법인 A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을 차입한 뒤, 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및 법률 비용 등 업무무관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사업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또 사주일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적발되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 1) 참고.

#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며 억대의 소득이 있는 법인대표 B씨는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본인이 운영 중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 자금을 변칙회계처리로 유출해 다른 법인의 차입금을 돌려막기(상환)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한 자금 중 일부는 자금여력이 없는 친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했다가 법인세 및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2 참고).

개발지역에 불법투기를 일삼은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에서 다수의 탈세혐 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조사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그림1)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1.05.13 dream@newspim.com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한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Table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하여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 경과 여부 Text 등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Text - (①업무 사용 여부) 조사법인은 '13년 및 '17년에 취득한 여수 임야와 여수 Text 토지를 '24년 말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Text 것으로 확인됨

Text - 조사법인은 여수 부동산을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여 '21 Text ~'23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고 있는 상태임

Text K '22년 조사법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물건 >

과세디	∦상 물건	상세니	역									0
									내려받기	조회건	[수 10	확인
	일련 번호	YTCII	NΕ	C 사게기/도 중시 표하\	7 710	0 호메IJ	V 기계대격		ō	당연도		
	번호	경데	이동	6.소재기(동.호수 포함)	7.지목	8.총면적	9.과세면적	10.개별공시	지가	1.감면율	12.감면후	공시가격
	1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잡종지	1,462.20	1,381.80			0.00		
	2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잡종지	4,610.30	710.30			0.00		
	3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잡종지	4,610.30	2,633.00			0.00		
	4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잡종지	95,733.40	4,257.00	1		0.00		
	5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잡종지	95,733.40	91,476.40			0,00		
П	6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산	임야	49,853.00	49,853.00			0,00		

Text • 실제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조사법인이 현재까지 여수 소재

Text 부동산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Text < 쟁점 부동산 전경 사진 >



Text - (②업무무관자산 해당) 조사법인은 여수 부동산을 취득 후 유예기간(5년)이 Text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않았으며,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Text 않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Text - 조사법인이 '17년 취득한 여수 토지는 매립지로 취득 당시부터 매립목적

Text (유통, 가공시설 용지 등) 외 사용이 불가한 토지로 확인됨

#### Text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Table

ble	[토지] 저	라남도 여수시 나					
	[ 五	COM ACTION IN IN IN IN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7년1월19일 전략	가남도 여수시 💻		잡종지	95733.4m²	
	[ 같		(소유권에 관형	- , , ,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수	등 기	원 인	권리지	/
	1	소유권보존	2017년1월19일 제1293호			전라남도	식회사
	1-1	<del>금기사항등기</del>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매립면취관정의 승인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13일)부터 10년이내 매립목적(유통,가곤	= 준공검사일(2016년 12월 에는 시설용기 및 경하여 사용한 수 없다.
	2	소유권이천	2019년5월10일 제8976호	2019년5 <sup>-</sup> 신탁	월8일	수탁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신탁	2010: 35031003		- 31	신탁원부 제2019-4	1
	3	1-1번금지사항등기 말소	2019년5월10일 제8976호			소유권이전등기로 인	<u> </u> 하여
	4	1-1번약정/금지사항 /환매특약등기회복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2021년2월3일 등기	
	1-1	금지사항등기				매립목적을 변경하기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13일)부터 10년이내 매립목적(유통,가공	

Text •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
Text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여부 검토

#### Text K 조사법인의 보유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Table

ole	소재지	취득일	지목	업무무관 여부
	전남 여수 △△ 산 00-0	'13. 3. 31.	임야	여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여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여
	전남 여수 △△ 0000	'17. 1.19.	제방	여
	전남 여수 △△ 0000	'17. 1.19.	잡종지	여

Text -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유지관리비(재산세·종부세) 0,000백만원 및 업무무관

Text 자산 지급이자 0,000백만원 등 합계 0,000백만원 손금불산입함

#### Text < 유지관리비 및 지급이자 >

(백만원)

т	٠.	h	ı
	а	U	IC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유지관리비	_	_	0	000	000	000
토지 및 임야	지급이자	0	0	00	0,000	0,000	0,000
	합 계	0	0	00	0,000	0,000	0,000

**Table** 

#### 세법해석례 서이46012-10623, 2002.3.26.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 금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Table

#### 판례 조심 2020중8052, 2021.12.28.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Text 나.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조사 항목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를

Text 제시하고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Text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 **적출**②

## ❖ 합병·분할 (항목코드: 11403)

####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Text **1. 조**사착아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1X. 1월 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를 합병하면서

Text 이월결손금 000억원을 승계하였으며, '19~'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로부터

Text 승계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바 승계받은 사업

Text 외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당 공제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착안함

#### Text < 조사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내역 >

(백만원)

Table

구 분	합 계	'19년	'20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	00,000	00,000
이월결손금 공제액 (전액을 ○○○㈜로부터 승계)	00,000	0,000	00,000
과세표준	00,000	0,000	00,000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Table**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2.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법인은 '1X. 1월 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를 합병하면서

Text 이월결손금 000억원을 승계하였으며, '19~'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승계한

Text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어 검토

- Text (구분경리 대상) 합병당사법인이 동일사업 또는 중소기업 간 합병의 경우
  - Text 구분경리 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 Text 공제할 수 있으나,
- Text ▼ 조사법인은 중견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는 주거용건물 개발

  Text 및 공급업(부동산업)으로 구분경리 대상에 해당함
- Text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의 60%를 Text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로 적용하였으나,
- Text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로부터 승계받은 주거용건물

  Text 개발 및 공급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60%에 해당
- Text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에 귀속되는 경비를 구분한 후, 공통되는 판관비,
  - Text 영업외 수익·비용 및 세무조정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
  - Text 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에 따라 안분계산한바, 2019사업연도에
  - Text 이월결손금 000백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2020사업
  - Text 연도에 전액 추인되므로 기간 귀속차이에 따른 가산세 00백만원 추징함

#### Text < 승계받은 사업의 이월결손금 증감 내역 >

(백만원)

Table			2019			2020	
	구 분	당초 (①)	변경 (②)	증감③ (①-②)	당초 (①)	변경 (②)	증감③ (①-②)
	각 사업연도소득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이월결손금	0,000	0,000	△000	00,000	00,000	000

Table 세법해석례 서면2020법인4660, 2021.3.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45조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법해석례 제도46012-11463, 2001.6.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인 경우에 피합병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 Text 나. 과세 처분 유지

Text 조사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③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납액(조경공사) 비용 손금 부인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bigcirc$  조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 $\bigcirc$  $\bigcirc$ 은 '18년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태양광발전㈜와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Text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EPC 공급계약」을 체결함 조사법인은 ㈜◎◎으로부터

<sup>Text</sup>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에 토목공사

Text 용역을 제공하였음

Text - 조사법인은 ㈜◎◎으로부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Text 받아 ㈜◎◎에 토목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없는

Text <u>것으로 확인되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매출 누락 여부 또는 업무무관</u>

Text (대납) 경비에 대한 검토 착안함

#### Text <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현황

リトラテトのは残って会と		TUNE			Challett
시공자 인적사항		공사정보	**************************************		당해년도신
상호명 ▼	공사명	공종세분 🔻	발주자명 ▼	계약종류 🔻	기성금액
(주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EPC 공	급계약(토목) 택지조성	태양광발전㈜	원도급	
(주)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EPC 공	급계약(건축) 사무실빌딩	태양광발전㈜	원도급	
(주)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EPC 공	급계약(조경) 기타조경시설	태양광발전㈜	원도급	
	프샤면		발주 <b>자면</b> ▼	계약조류 🔻	기선금액/
시공자 인적사항 상호명 ▼		공사정보 - 공종세분 ▼	발주자명 <b>▼</b>	SHOLES	당해년도신고 기성금액(
(주)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EPC		대양광발전㈜	하도급	
	페이지 안내				
	7	98MW 태양광발전단	<u>-</u> '지 조성사업		
◆ ㈜◎◎ 홈	7	98MW 태양광발전단	<u>단</u> 지 조성사업		
<ul><li>♠ ㈜◎◎ 홈</li><li>사업명</li></ul>			<sup>난</sup> 지 조성사업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퇴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①조경공사 계약체결) ㈜ ⓒ ② 20.3월 태양광발전단지에 4만 5,000평 Text 규모의 '000 000000'이라는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Text ■ 조사법인은 '20.7월 ㈜△△△에 '◇◇◇◇ 태양광 000 000000 조경공사'를
Text 위탁하고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 Text < '20년 ㈜△△△△ 건설공사 실적명세 中 >

(백만원)

Table	상호명	공사명	착공일	완공일	기성금액	계약종류
	㈜ 스 스 스 스	◇◇◇◇◇ 태양광 000 0000 조경공사	'20.07	'20.08	000	하도급

Text - (②건설실적 신고내역) 조사법인은 ㈜△△△으로부터 '000 000000 조경공사' Text 용역을 제공받고 00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Text ■ 조사법인은 ㈜◎◎ 또는 원도급자 ◇◇◇◇ 태양광발전㈜에 000 000000 Text 조경공사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경공사 건설실적을 신고한 Text 사실이 없음

Text - (③조경공사 지출의무) 조사법인이 담당하는 공사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공사 Text 중 토목 공사로 한정되어 토목 공사 외 조경공사 등 다른 공사비용을 지출할 Text 의무가 없으므로

Text ● 000 000000 조경공사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일괄 수주한 ㈜◎◎이 Text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에 해당

Text ○ 해당 조경공사는 ㈜◎◎이이 수행 완료한 조경공사의 추가 공사분으로 Text ㈜◎◎에서 수행했어야 하나 조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Text 실제 ㈜◎◎이 수행했어야 할 공사를 조사법인이 대신 수행한 것이므로

Text 조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해당 공사비 000백만원(공급가액)

Text <mark>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00만원 매입세액 불공제함</mark>

#### 법령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Table**

#### 판례 조심 2020부1522, 2022.8.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Text 나. 도전적 과세 및 처분 유지

Text ○ 조사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 적출4

#### ❖ 감가상각비 (항목코드: 10904)

## 무형자산 내용연수 오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0													2019년	년 12월 31일 현재	1
관리번호	자산내역	취득일자	내용연수	상각률	월수	취득가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기초누계액	당기충당	당기감소	기말잔액	미상각잔액	ć
201901	영업권	2019-01-31	10	0.1	12										
								0				0			
201512	국문홈페이지	2015-12-31	5	0.2	12										
201512	중문홈페이지	2015-12-31	5	0.2	12										
201705	보안프로그램	2017-05-29	5	0.2	12									7	
201710	MS오피스	2017-07-28	5	0.2	12										
201701	보강토신기술	2016-04-25	5	0.2	12										
201711	DB암호화	2016-04-25	5	0.2	12										
201809	모바일핸드북	2018-09-04	5	0.2	12										
201812	ERP	2018-12-10	5	0.2	12										
201812	모바일홈페이지	2018-12-27	5	0.2	12										
201811	토석채취허가권	2018-11-01	5	0.2	12										
201903	신규브랜드	2019-03-28	5	0.2	10										
201012	자산관리솔루션	2019-12-31	5	0.2	1						<b>"</b>			1	1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Table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내용연수	무 형 자 산
1	514	영업권, 디자연권, 실용선안권, 상표권
2	7 <u>v</u> d	특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14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촉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 권
5	50년	냄사용권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법인은 '18년 11월 ☆☆☆☆☆☆☆☆☆☆(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권'**을 취득할 Text 당시 당초 지자체(해남군)와 사용 계약기간을 근거로 내용연수를 5년을

Text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Text ○ 조사법인은 '18년 11월 ☆☆☆☆☆☆☆☆☆주로부터 '전남 해남군 00면 00리

Text 산 000번지 외 5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권'을 감정평가를 통해 0,000백만원에

Text 취득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Text - 내용연수 10년을 착오 적용함으로써 감가상각비 0,000백만원을 과다계상 Text 하였음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함

#### Text <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

(백만원)

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감가상각비 부인액	000	000	000	000	000	0,000

##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 논리

Text 이 (납세자 주장) 조사법인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한 후에 다시 무상으로 Text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Text -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해당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Text 합리적이나, 최초로 자산을 취득시부터 사용·수익기간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Text 세법에서 자산별로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당초부터 사용·수익기간이

Text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실질을 잘

Text 반영할 뿐 아니라 감가상각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함

Text (조사팀 주장) 조사법인의 주장대로 용역제공기간을 기계장치 등 유·무형

Text 자산의 내용연수로 적용하게 되면 사인간에 계약 및 계약변경의 방법으로

Text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Text 감가상각 관련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바,

Text - 조사법인이 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한 것은「법인세법」상

Text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 법인세법

Text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한도액을

Text 재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함이 타당함

Table

#### 판례 조심 2010중2738, 2011.5.27.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임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임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사용계약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 것과 그 이후 내용연수 변경은 모두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Text 다.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조사 항목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를

Text 제시하고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Text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 적출5

## ❖ 손익·비용 귀속시기 오류 (항목코드: 10204) 계열사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귀속시기 오류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 Text < 각 사업연도말 계열사 차입금 계상 현황 >

(%. 백만원)

Table

ble	차입처	이자율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4.60	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4.26	0,000	0,000	0,000	0,000	0,000
	㈜◆◆◆산업	4.60	0,000	0,000	0,000	0,000	0,000

Text - 조사법인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이자

Text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Text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법령

Text ○ 조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계열사들로부터 차입한 금액 관련 계약서(금전

Text 소비대차 계약서 등),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수내역 등 증빙자료 요청하여

Text 차입금 유무 및 당해연도 비용 계상한 지급이자 실제 지급여부 검토

Text - (자금차입) 조사법인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Text 실제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후 당기 비용으로

Text 처리함

Text - **(가지급금으로 분류)** ㈜□□ 및 ㈜◆◆◆◆◆은 조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Text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Text 하였으며

Text ■ ㈜◎◎의 대여금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Text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Text < (주)□□ '22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Table	사 업 연 도	2022.01.01	가지	급금 등의 조정명세		자	법 사업	인 명 자등록번호	(주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시가인	정범위	④조전액(=⑦)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인정이자	⑥회 계성	l사 남액	①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0					-51,965	0.00	0

#### Text < (주)◆◆◆◆◆ '22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Table	사 업	2022.01.01	가지:	급금 등의		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연도	2022.12.31		조정명세	서(갑)		사업	자등록번호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7  T  7  7	@ JI A J	O=171건스	0.5		(1	시가인	정범위	⑨조정액(=⑦)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인정이 <mark>자</mark>	⑥회 계상	색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⑨조정액(=⑦) ①≥3억이거나 ⑧≥5%인경우	
			0					-1	0.00	0	

Text - (미지급이자 비용처리) 조사법인은 '19~'23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Text 계열사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후

Text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일부터

Text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 지급하는

Text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Text ○ 조사법인이 ㈜□□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Text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Text 않은 미지급이자 0,000백만원 손금불산입함

#### Text < 손금불산입 대상 미지급이자 >

(백만원)

**Table** 

€	구 분	'20	'21	'22	'23	합계
	미지급이자	000	000	000	000	0,000

**Table** 

#### 판례 서면 2018 법인 3132, 2019.02.28.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속하는 사업연도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이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Text 나.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ext ○ 조사 항목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를

Text 제시하고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Text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항목코드: 50206) 적출⑥ 계열사 사업시행권 이전 시 기지출 비용 미수취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 조사법인은 '18. 8.22.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 Text 되었으며, '18.8월~'19.1월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문화재 Text 표본조사 등으로 0억원을 지출함

Text <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Table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2018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공동시행) ○ 시장 / ○ ○ ○ ○ ○ ○ ○ ○ ○ ○ ○ ○ ○ ○ ○ ○ ○ ○

## Text <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관련 비용 지출 >

(백만원)

Table			( ¬ Ŀ Ŀ)
Table	공급자	공급가액	품 목
	합 계	000	
	00증권㈜	0	☆☆공원 예치금반환채권 신탁보수
	000000연구원	00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00측량기술원	000	지적확정측량 측량비 등
	주식회사 00	000	조사설계용역
	주식회사 00	0	광고비
	00일보	0	11월 ◎◎시청 공고문

Text - 조사법인은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19년 계열사

Text △△△△△△㈜에 사업시행권을 무상 이전하여 조사설계비 등 기 지출된

Text 비용에 대한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 검토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법령

Table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조사법인의 사업시행권 이전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및 사업시행권

Text 무상이전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 정산 내역 등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Text 여부 검토

Text - **(사업시행권 무상이전)** 조사법인은 '19.1월 공동시행자인 ㈜◇◇과 각각 Text 50%를 출자하여 △△△△△△㈜를 설립하고

■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권을 △△△△△△○○ 무상이전하여
 Text 19.2월 사업시행자가 △△△△△○○ 변경

#### Text <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 >

Table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
20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공동시행)
(당 초)
이 제시장 /
이 시장 /
이 시장 /

Text - (경제적 합리성 결여) 조사법인은 △△△△△△㈜에 사업시행권을 무상 양도하여 Text 조사설계비 등 0억원을 수취하지 않았으나.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지출

Text 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시행권 무상양도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Text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

Text ○ 조사법인이 ◎◎공원개발(주)와 조사법인이 '19.1.3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Text 사업시행권을 이전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 0,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Text 합의하였으나, 실제 대금 수령일은 '23.9.25.로 확인됨

Text - 지급받기로한 날('19.1.31.)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날('23.9.25.)까지의 기간동안 Text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백만원 Text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000백만원 손금불산입함

Table 판례 조심 2017서2495, 2017.08.21.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기한까지 OOO원만을 지급한 점, 쟁점미수금의 결제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

심사법인 2001-0068, 2002.02.0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매매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함

#### Text 나.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조사 항목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를
Text 제시하고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⑦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항목코드: 50206)

사주의 해외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

#### Text **1. 조사착아**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사주 AAA은 '15.10월 뉴욕 소재 부동산(00 West 63RD ST 16H MANHATTAN)을

<sup>Text</sup> 약 00억원(\$0,000,000)에 매각 후 대출액 등 비용 제외한 00억원(\$0,000,000)을

Text 국내 반입함

Text \* '10.5.25 뉴욕 소재 부동산 취득(\$ 0.000.000)

<sup>Text</sup> < 뉴욕부동산 양도 내역(Deed Record) >

**Table** Seller Information Legal Information **Original Name:** Assessor's Parcel Number: 1115-1855 Recording Date: 10/15/2015 Contract Date: 10/02/2015 Standardized Name: Document Number: 367943 Deed Type: DEED **Property Information** Original Property Address: Sales Information NEW YORK, NY 10023-7116 Sales Price: \$ Standardized Property Address: NEW YORK, NY 10023-7116 Mortgage Information **NEW YORK COUNTY** Title Company: LIBERTY LAND ABS Property Use: CONDOMINIUM (RESIDENTIAL) Transaction Type: RESALE Data Source: A

Text - 사주 AAA은 본인 소유 뉴욕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국내 반입하지

Text 않고 뉴욕에 거주중인 장녀 BBB에게 증여하였는지 검토 착안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Table**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이 사주 AAA의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장녀 BBB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Text 확인하기 위해 뉴욕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 수수내역 등 관련 자료를

Text 요청하여 검토

#### Text < 사주 AAA 뉴욕 부동산 매각대금 현황 >

(\$)

Table	양도가액	<b>대 출</b>	세 금	순회수액	<b>국내회수(반입)</b>	미 <b>회수</b>
	(A)	(圖)	(©)	(D=A-B-C)	(E)	(①-ⓒ)
	0,000,000	0,000,000	00,000	0,000,000	0,000,000	000,000

#### Text < 취득 시 뉴욕 부동산 등기(Deed) 신고 내역 기

le	FEES AN	D TAXES		
Mortgage		Filing Fee:		
Mortgage Amount:	\$		\$	0.00
Taxable Mortgage Amount:	\$	NYC Real Property	Fransfer Tax:	
Exemption:			\$	0.00
TAXES: County (Basic):	\$	NYS Real Estate Tra	ınsfer Tax:	
City (Additional):	\$		\$	0.00
Spec (Additional):	\$ 0.00		RDED OR FILED I	
TASF:	\$	OF	THE CITY REGIS	TER OF THE
MTA:	\$		CITY OF NEW	
NYCTA:	\$ 0.00		Recorded/Filed	06-09-2010 16:44
Additional MRT:	\$ 0.00		City Register File No.	.(CRFN):
TOTAL:	\$		2	2010000192411
Recording Fee:	\$	1625	D 14	11
Affidavit Fee:	\$ 0.00	SACTION OF	GRALLE MA	fell
			City Register Offi	iciai Signature

#### Text < 양도 시 뉴욕 부동산 등기(Deed) 신고 내역 >

Table		FEES A	AND TAXES
	Mortgage :		Filing Fee:
	Mortgage Amount:	\$ 0.00	\$
	Taxable Mortgage Amount:	\$ 0.00	NYC Real 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		\$
	TAXES: County (Basic):	\$ 0.00	NYS Real Estate Transfer Tax:
	City (Additional):	\$ 0.00	= \$
	Spec (Additional):	\$ 0.00	RECORDED OR FILED IN THE OFFICE
	TASF:	\$ 0.00	OF THE CITY REGISTER OF THE
	MTA:	\$ 0.00	CITY OF NEW YORK
	NYCTA:	\$ 0.00	Recorded/Filed 10-15-2015 09:16
	Additional MRT:	\$ 0.00	City Register File No.(CRFN):
	TOTAL:	\$ 0.00	2015000367943
	Recording Fee:	\$	- W. 11:4
	Affidavit Fee:	\$ 0.00	Grante M. Sill
			City Register Official Signature

○ 사주 AAA은 뉴욕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일부 자금 \$000,000(000백만원)을 손자인

Text BBB(딸)의 자녀 CCC·DDD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

Text 내역 및 교육비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Text 보아 증여세 000백만원 추징함

#### Text < 사주 AAA 뉴욕 부동산 매각대금 현황 >

(\$)

Table	양도가액	미츠사히	세금 등	ત્રો બો	구미하스해	미희수액	교육비 지급액		
	る王八甲	네팔강전	기타 비용	선택	4 4 4 T 4   		CCC	DDD	합 계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 논리

Text ○ (납세자 주장) 조사대상자는 피증여자의 해외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Text 인정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Text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4항에 따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Text 비용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Text (조사팀 주장) 조사대상자의 주장대로 피증여자의 해외 교육비 명목으로

Text 지급하였고 실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만, 피증여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Text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피증여자(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Text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Text 과세함이 타당함

**Table** 

#### 질의 재산세과-4168, 2008.12.10.

유학비 송금액의 증여 해당여부 및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여부

-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대상이 아님.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함

**Table** 

#### 판례 국심2005서1325, 2005.07.20.

조모가 유학중인 손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학자금 또는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 비나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재산인지 여부

- 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 받을 당시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본인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부양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어 청구인의 유학비 등의 학자금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조모가 손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판례 조심2020서0143, 2020.07.21.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쟁점할증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그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Text 다. 과세 처분 유지

Text ○ 조사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조사대상자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

Text - 조사대상자는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Text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